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 (경유)

제목 건설사업관리 시행여부 및 운영방안 알림

- 1. 관련근거
 - 가. 건축처-2855('17.10.12)『건설사업관리 심의 위원회 운영 검토요청』
 - 나. 舊 서울메트로 디자인건축팀-2163(110.3.3)『책임감리 심의위원회 운영(안)』
 - 다.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
- 2.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시행·운영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2항(동법 시행령 55조 1항)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.
- 3. 건설사업관리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(진흥법 제39조 1항 등)에는 공사특성이나 사업여건, 기술인력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사발주부서(해당 처 주관)에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추진 가부를 결정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건설사업관리 시행여부 판단

구 분	변경 전 (구 1-4호선)	변경 후 (서울교통공사)	비고
건설사업관리	건축처 주관	공사발주부서 (해당 처,단 주관)	건설사업관리 시행여부 판단

- 나. 관계법령 주요내용
 - 1)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1항)
 -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(세부대상 붙임참조)
 -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건설 사업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
 - 2) 건설사업관리를 할수 있는 경우(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1항)
 - 설계·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호나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
 - 발주청의 기술인력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
 -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- 붙임 1. 관련문서(관련근거 참조) 1부.
 - 2. 관계법령(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) 부분발췌 1부.
 - 3. 국토교통부 고시[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) 부분발췌 1부. 끝.

기 술 본 부 장

수신자 전기처장,정보통신처장,궤도처장,신호처장,기계처장,전자처장,토목처장,건축처장,전기1사업소장,전기2사업소장,정보통신1사업소장,정보통신2사업소장,궤도1사업소장,궤도2사업소장,신호1사업소장,신호2사업소장,기계1사업소장,기계2사업소장,전자1사업소장,전자2사업소장,토목1사업소장,토목2사업소장,건축1사업소장,건축2사업소장,승강장안전문관리단장,승강기관리단장

협조자

시행 기술계획처-3861 (2017.10.17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-48(용답동)/http://www.seoulmetro.co.kr 전화 6311-9715 전송 / psw21c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